



제 334 회 임 시 회
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2. 08. 25(목)

경 상 북 도 재 난 현 장 통 합 자 원 봉 사 지 원 단
구 성 및 운 영 등 에 관 한 조 례 안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35
제안일자	2022. 08. 12.
회부일자	2022. 08. 18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
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박영서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4. 관련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제2항, 제17조의2
-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제4항제6호

5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2.08.18. ~ 08.24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72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7. 검토의견

☐ 제안이유

-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
- 이에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됨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
- 안 제3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
 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체계상 위치와 설치 시 고려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
 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단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
 - 재난 유형·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7조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재난정보를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전달하도록 규정함
 -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현장에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8조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이 활동 종료 후 평가 및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재난이 발생 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□ 종합의견

- '22년 3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장기·최대 피해를 기록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 받고 있음
- 또한, 재난현장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울진산불 피해 주민들은 '22년 8월의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또 다시 고통 받음
- 재난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한 지역별·현장별 적합하고 탄력적인 복구 활동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

- 행정안전부에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치단체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 적합한 자원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《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요약 》

- 필 요 성 : 세월호 참사, 경주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서 자원봉사 운영 어려움 발생
→ 자원봉사 역량 발휘 불가 → 자원봉사 컨트롤 타워 필요성 대두
- 운영기준 : 재대본 가동되고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
자원봉사센터 자체 대응만으로 역량초과가 예상될 경우
- 구 성 : 자원봉사센터 + 행정기관 + 구호기관 + 자원봉사단체 등
- 운영내역 : 울진('22, 산불), 군위('22, 산불), 영덕·울진('19, 태풍), 영덕('18, 태풍)

구분	조례 제정
경상북도	X
포항시	O
경주시	O
김천시	O
안동시	O
구미시	O
영주시	O
영천시	O
상주시	O
문경시	O
경산시	O
군위군	O
의성군	O
청송군	O
영양군	O
영덕군	O
청도군	O
고령군	O
성주군	O
칠곡군	O
예천군	O
봉화군	O
울진군	O
울릉군	O

○○시/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○○시·도지사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○○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○○시·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「○○시·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○○시·도 자원봉사센터(이하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.)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○○시·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

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OO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 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·지원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대외협력팀

3. 현장파견팀

4. 자원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소관 시·군·구 지원단의 위치
2. 소관 시·군·구 자원봉사자의 규모
3.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4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O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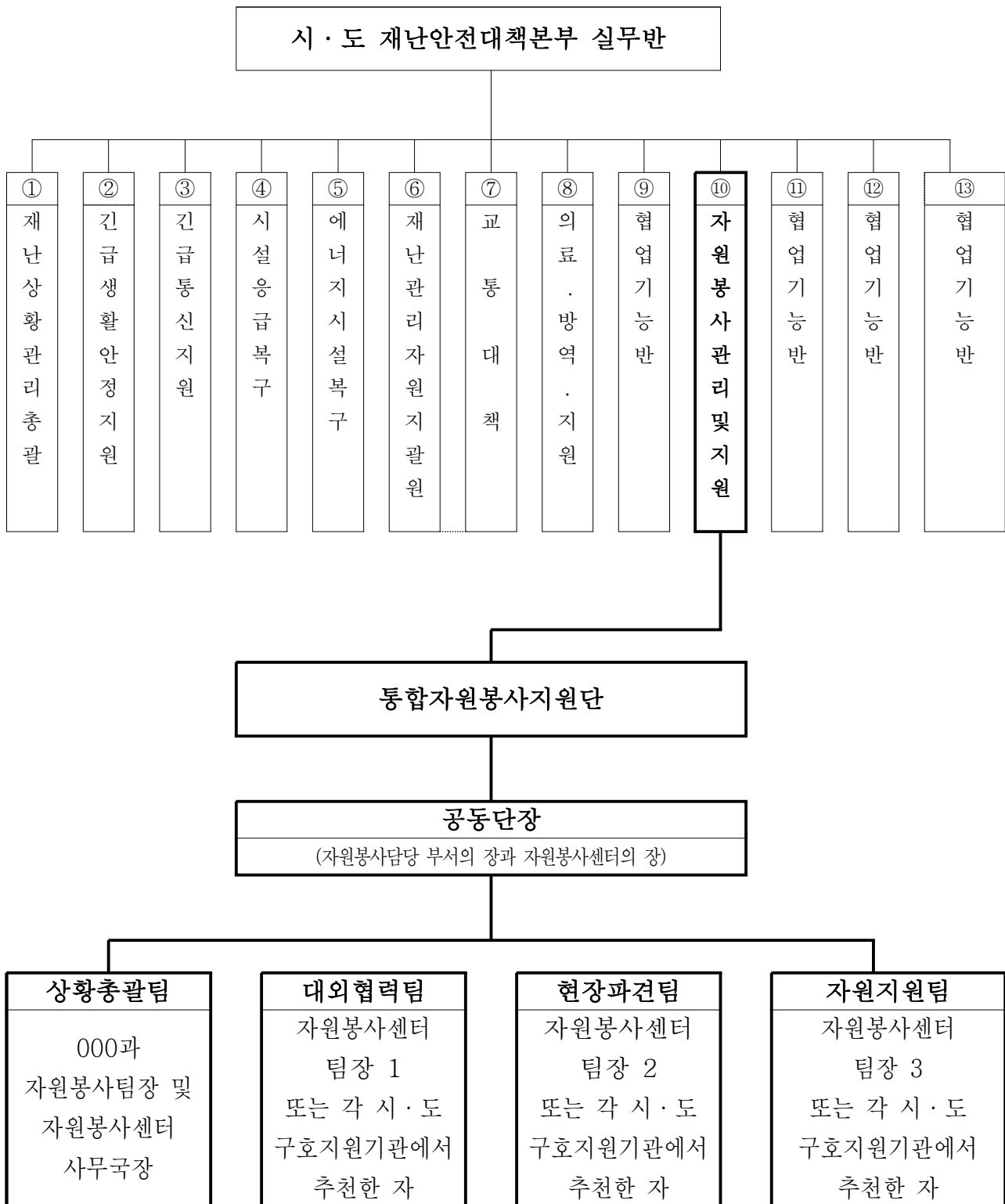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·자원 지원 현황, 시군구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시·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2]○○시·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(제6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성(명)	업무
상황 총괄팀	· 팀장() : ○○○과 자원봉사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· 팀원() : ○○○과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	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·조정 ·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대본 보고 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·재정적 지원 · 시·군·구와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
대외 협력팀	· 팀장() :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각 시·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· 팀원() :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홍보담당 공무원	·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·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·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·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
현장 파견팀	· 팀장() :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각 시·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· 팀원() :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	· 시·군·구 지원단 파견 ·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·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
자원 지원팀	· 팀장() :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각 시·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· 팀원() :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	·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· 자원봉사자 관리·지원 및 안전조치 ·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

※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